

[별표 6] <개정 2005.8.5, 2007.2.1>

채석장비 및 기술인력(제33조관련)

1. 토목용·조경용 채석을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

- 가. 천공기(穿孔機) : 1대 이상(무한궤도식일 것)
- 나. 굴삭기 : 1대 이상(바켓용량 0.7세제곱미터 이상)
- 다. 로우더(Loader) : 1대 이상(바켓용량 0.7세제곱미터 이상)
- 라. 운반장비 : 1대 이상(15톤 이상의 트럭)
- 마. 기술인력 : 굴삭기·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를 가진 자 1인 이상

2. 건축용·공예용 채석을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

- 가. 천공기 : 1대 이상(무한궤도식일 것)
- 나. 굴삭기 : 1대 이상(바켓용량 0.7세제곱미터 이상)
- 다. 로우더 : 1대 이상(바켓용량 0.7세제곱미터 이상)
- 라. 운반장비 : 1대 이상(15톤 이상의 트럭)
- 마. 석재절단기 : 1대 이상[분당 0.8세제곱미터 이상, 와이어소(Wire-saw) 또는 젯버너(Zet-burner)]
- 바. 기술인력 : 굴삭기·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각 1인 이상

3. 쇄골재용 채석을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

「골재채취법」에 의한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
비 고

- 1. 「건설기계관리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.
- 2. 장비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채석허가신청시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3.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(엔진·기관·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)만을 이용하여 채석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4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(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)이 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에 따라 채석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채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